#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595

> 2008. 3.19. 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. 3. 5. 김찬경 의원외 8인

나. 회부일자 : 2008. 3.13.

다. 상정일자 : 2008. 3.18.

#### 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김찬경 의원

#### 나. 제정이유

○ 지방화・세계화시대 국내외교류의 인적,물적교류가 점차 확대됨 에 따라 자매결연사업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외 교류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대상, 제의, 사전교류(안 제3조, 제5조)
  - 대 상 :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
  - 제 의 : 당해 국내외 도시의 각종자료 및 지역여건 검토후 결정
  - 사전교류: 자매결연 체결전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 조성
- 자매결연체결등 의회동의(안 제6조) 자매결연의 체결, 변경, 파기의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 필요

○ 교류사업의 지원등(안 제9조) 교류사업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번 광진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
- 지방화, 세계화 시대에 국내외간 인적물적 정보교류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자매결연 사업의 보다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 국내외 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코자 제정하는 것으로

#### 조례구성은

제1조(목적)에서 제11조(자매결연 취소),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#### 주요 제정내용은

가. 자매결연의 제의( 안 제4조)

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제의시는 지역 여건과, 상호보완 발전가능성, 상호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,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감안 제의 교류 원칙마련 나. 사전 교류(안 제5조)

자매결연 체결전에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 조성

- 다. 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(안 제6조)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, 변경, 파기시 사전에 의회 동의 명문화
- 라. 자매결연 취소( 안 제11조)

자매결연이 유명무실, 지속적인 교류 불가능시 취소근거 규정 마련

-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은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 이였으나
  - 2004.1 이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사항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후 추진토록 되어 있음
  - 광진구는 현재 조례등이 없어 구청장 방침으로 추진 -

○ 따라서, 자매결연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류 원칙 등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,

또한, 이 조레는 상위법령 등에 상충되지 않고 법형식 및 체계, 용어 등도 문제점가 없다고 봄

참고로 현재 동대문, 강남, 송파, 강동 등에서 이미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 음

## 5. 토 론

○ 찬성토론 : 없음

○ 반대토론 : 없음

## 6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7인중 7인의 찬성으로 **원안가결** 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